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형사1부장 김창진

전화 051-780-4308

보도자료

2020. 10. 29.(목)

제 목 드론 이용 고층 아파트 내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 사건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(제11조 제1항)

- 부산동부지청은 오늘(10. 29.) 드론을 비행시켜 고층 아파트 내에서 나체 상태로 성관계 중인 남녀 등을 몰래 2회 동영상 촬영한 A를 구속 기소하고, 공범 B를 불구속 기소함

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피고인

- A(41세) 및 B(29세)

○ 공소사실 요지

- 공모하여 '20. 9. 19. 00:08경~03:03경 A는 드론을 작동시키고 B는 촬영 대상을 지목하는 등 인근 고층 아파트 내에서 나체 상태로 성관계 하는 불상의 남녀 등을 드론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2회 동영상 촬영 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 촬영)]

II

수사 경과

- '20. 9. 19. 부산남부경찰서 수사착수 (수사단서: 112 신고)
※ 신고자 거주지에 드론이 추락하여 112신고 접수
- '20. 10. 7. 피고인 A 구속
- '20. 10. 13. 피고인 A 구속 송치, 피고인 B 불구속 송치
- '20. 10. 14. ~ 10. 28. 피고인 A, B 조사 및 디지털 증거 재분석
- '20. 10. 29. 피고인 A 구속 기소, 피고인 B 불구속 기소

III

참고 사항

- 특별비행승인 없이 드론을 야간 비행한 행위는 항공안전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므로 부산지방항공청에 통보 예정
- 다만, 범행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·유포한 정황, 영리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한 정황, 본건 이외에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함
 - ※ 아파트 창문 밖에서 내부를 촬영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'신체의 침입'으로 보기 어렵고, 드론은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등 '영상정보 처리기기'에도 해당되지 아니함
- 향후에도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날로 위협적으로 변해가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임 ☑